KOTRA자료 21-200

# RCEP 실무활용 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CONTETNS


Ⅰ 개요

1. RCEP이란? ····· 02
2. RCEP 회원국 수출입 동향 ····· 03
3.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 04

Ⅱ RCEP 협정 활용 프로세스

1. RCEP 협정 활용 절차 ····· 08
2. RCEP 협정문 주요 특징 ····· 46

Ⅲ RCEP 협정의 차별점

1. 한-RCEP간 기 체결 FTA현황 ····· 48
2. 기존 FTA 협정과 주요 차별점 ····· 48
3. 일본과의 최초 FTA활용방안 ····· 54

Ⅳ RCEP 협정 활용 TIP

1. 회원국별 주요 양허품목 ····· 58
2. RCEP 협정 활용 유망업종 ····· 63
3. RCEP활용 지원대책 ····· 65

# I 개요

## 1. RCEP이란?

### 1) 의의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임.
- RCEP은 GDP 및 무역 규모 측면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무역협정이기도 함.
- 현재 국회 동의절차를 마치고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동 사무국은 '22.2.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임을 통보함.

### 2) RCEP 협상 추진경과

| 일자 | 협상 내용 |
|---|---|
| 2011.11월 |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6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은 RCEP을 2012.11월에 협상개시 추진하기로 선언 |
| 2012.11.20 |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정 협상개시 선언 |
| 2013.5 | 협상개시 후 2020.11월까지 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개최 |
| 2017.11 |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2018년 RCEP 실질타결을 목표로 설정 |
| 2018.11 |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타결을 결의 |
| 2019.11.4 |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 |
| 2020.11.15 |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간 RCEP 최종 서명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2. RCEP 회원국 수출입 동향

### 1) ASEAN

(단위: 백만불)

| 2020년 | 수출 | 수입 | 교역 |
|---|---|---|---|
| 필리핀 | 7,126 | 3,085 | 10,211 |
| 말레이시아 | 9.076 | 8,894 | 17,970 |
| 싱가포르 | 9,826 | 8,444 | 18,270 |
| 인도네시아 | 6,317 | 7,594 | 13,911 |
| 태국 | 6,853 | 5,196 | 12,049 |
| 브루나이 | 82 | 215 | 2979 |
| 베트남 | 48,543 | 20,579 | 69,122 |
| 라오스 | 50 | 44 | 94 |
| 미얀마 | 610 | 465 | 1,075 |
| 캄보디아 | 567 | 318 | 885 |
| 합계 | 89,050 | 54,834 | 143,884 |

### 2) 非ASEAN

(단위: 백만불)

| 2020년 | 수출 | 수입 | 교역 |
|---|---|---|---|
| 호주 | 7,126 | 3,085 | 10,211 |
| 뉴질랜드 | 9.076 | 8,894 | 17,970 |
| 중국 | 9,826 | 8,444 | 18,270 |
| 일본 | 6,317 | 7,594 | 13,911 |
| 합계 | 165,298 | 174,791 | 340,089 |

# 3.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 1) RCEP 협정문 구성

(단위: 백만불)

| 장 | 표제 | 장 | 표제 |
|---|---|---|---|
| 1 |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 11 | 지식재산 |
| 2 | 상품 무역 | 12 | 전자상거래 |
| 3 | 원산지 규정 | 13 | 경쟁 |
| 4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14 | 중소기업 |
| 5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15 | 경제 및 기술 협력 |
| 6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16 | 정부조달 |
| 7 | 무역구제 | 17 | 일반 규정 및 예외 |
| 8 | 서비스 무역 | 18 | 제도 규정 |
| 9 | 자연인의 일시 이동 | 19 | 분쟁해결 |
| 10 | 투자 | 20 | 최종 규정 |

## RCEP 협정문 활용

FTA 발효 이후 얼마나 / 언제 관세가 낮아질까? →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3. 원산지 규정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 2)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요약

»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정의

- 자유무역지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의 수립, 여러 장(chapter)에 걸쳐 등장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 협정의 목적 등 규정

» 제2장 상품 무역

- 내국민 대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등 상품 시장 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이행을 위한 연도별 관세율은 부속서 Ⅰ(관세 양허표)에 규정

» 제3장 원산지 규정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준과 부속서 3-가에 HS Code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규정
-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 원산지증명서 관련 절차에 대하여 규정 및 부속서 3-나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 최소정보 요건 기재

»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일관성 및 투명성, 사전심사, 상품의 반출, 특송화물, 재심사 및 불복청구 등을 규정

»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WTO SPS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당사자들의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협력 협의 강화 등을 규정

»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아세안 · 인도 등 기체결 FTA TBT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범 마련

» 제7장 무역구제

- RCEP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RCEP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제8장 서비스 무역

- 제8장 본문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주요 의무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 인정, 지불 및 송금, 국내규제 등을 규율

»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 당사자 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불포함

» 제10장 투자

- 투자규범 조항(제10.3조~제10.1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제11장 지식재산

-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에 걸쳐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보호 규범을 마련

» 제12장 전자상거래

-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적 무역 행정문서를 수용하고, 전자인증·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

» 제13장 경쟁

- 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①경쟁 관련 법 규정의 기본원칙, ②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협력, ③정보교환 및 비밀 유지 등을 규정

» 제14장 중소기업

- 중소기업 챕터의 목적(제1조)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보 공유(제2조) 및 협력(제3조)에 대한 세부 조항 상세 명시

»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 경제 및 기술협력을 정의하고(제1조), 경제 및 기술 협력 목적(제2조), 적용범위(제3조) 및 자원(제4조)에 관련한 세부 조항 상세 명시

» 제16장 정부조달

- ①정부조달 관련 법·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②당사자간 정보 공유·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③향후 정부조달 촉진을 목적으로 동 챕터를 검토할 것을 규정

»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 지리적 적용 범위, 정보 제공, 비밀 유지 등 협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 및 예외에 관해 규정

» 제18장 제도 규정

- 협정의 운영, 이행의 점검 및 감독을 위한 위원회 및 그 부속기구의 설치 및 운영, 의사결정 규칙 등을 규정

» 제19장 분쟁해결

- 협정의 해석 및 적용, 협정 의무의 불이행 등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

» 제20장 최종 규정

- 협정의 발효, 개정, 다른 협정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 설명자료

# Ⅱ RCEP 협정 활용 프로세스

## 1. RCEP 협정 활용 절차



## STEP 1. HS Code 확인

### 1) HS Code란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세계관세기구(WCO) 가입국가는 기본적으로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음. 국가별 실정에 따라 세부적인 자릿수를 규정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10자리의 HSK를 활용.

### 2) HS Code 분류

HS Code는 각 자리 수 별로 부(Section)-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로 구성됨. 대분류인 "부"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을 따르면서 표제는 생산품(Product)과 제품(Article) 별 대표로 구분하고, 중분류인 "류"는 2단위, 소분류인 "호"는 4단위, 세분류인 "소호"는 5, 6단위, 그리고 그 아래 7단위 이상은 국가별 실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함.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화물자동차의 품목분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됨.

| | | |
|---|---|---|
| 부(Section) | 제 17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류(Chapter) | 제 87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호(Heading) | 8704 | 화물자동차 |
| 소 호<br>(Sub-Heading) | 8704.2 ~ 8704.9 | 내연기관의 종류에 따른 분류 |
| | 8704.21 ~ 870.90 | 총중량에 따른 분류 |
| | 8704.21.10 ~<br>8704.90.90 | 일반 화물 자동차 또는 기타 화물 자동차 여부에 따른 분류 |
| | 8704.21.1010 ~<br>8704.90.9090 | 신차 또는 중고차 여부에 따른 분류 |

* HS CODE는 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 함
따라서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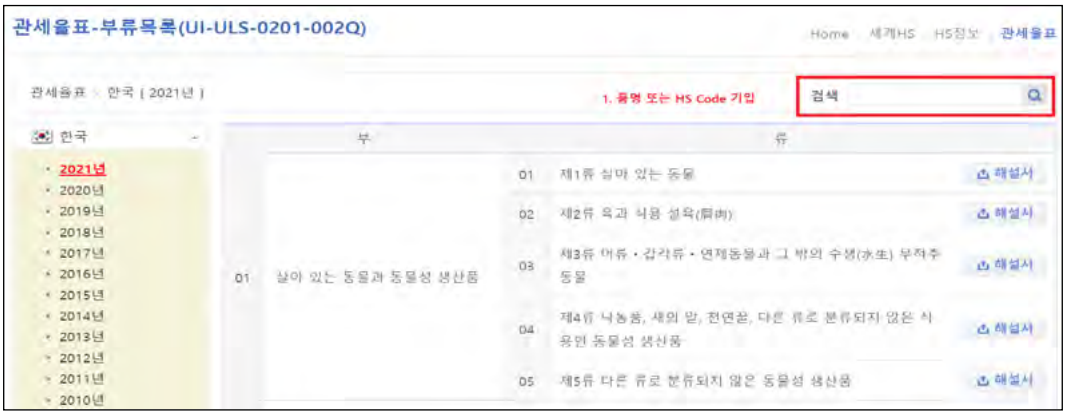
## STEP 1. 회원국별 관세율 확인

1) 한국 (URL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수출품목 HS CODE 6자리 확인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 「세계HS정보」 항목에서 「한국」을 선택 → 검색창에 품명 또는 HS CODE로 검색 → HS CODE 10단위에 해당하는 HS CODE를 클릭하여 관세율 확인 →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관세율표-부류목록(UI-ULS-0201-002Q)
Home 세계HS HS정보 관세율표
관세율표 한국 [ 2021년 ]
1. 품명 또는 HS Code 기입
검색
한국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부
류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해설서
02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屠肉) 해설서
0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해설서
04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해설서
05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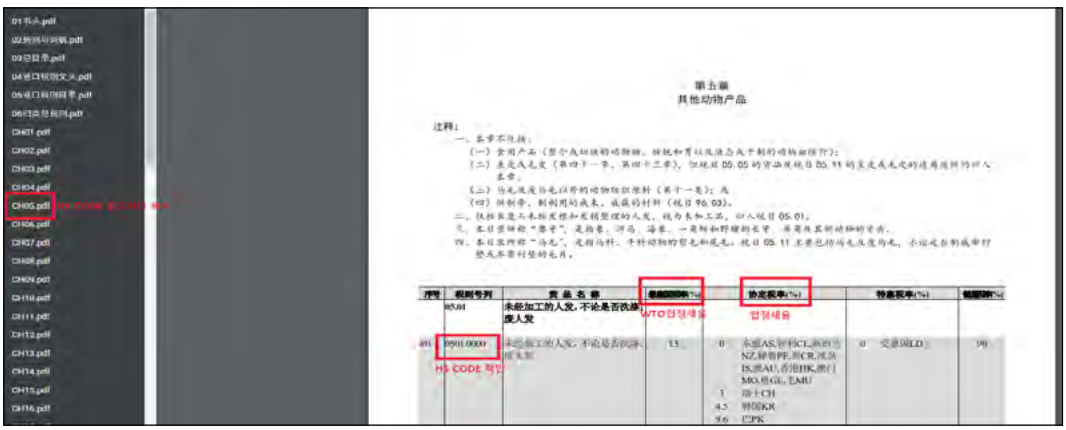

국내관세율 상세목록(UI-ULS-0201-005Q)
Home 세계HS HS정보 관세율표
검색 8418
품목번호
품명 [ 한국 2021년 ]
한글
영문
기본세율
탄력양허세율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electric or other;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heading 84.15.
8418 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8418 10 10 가정형 Of the household type 2. 클릭 시 상세 세율 확인 가능
8418 10 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Of a capacity not exceeding 200 ℓ 8% E1 6%
8418 10 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Of a capacity exceeding 200 ℓ but not exceeding 400 ℓ 8% E1 6%


국가 한국
해당년도 2021년
품목번호 8418.10-1010
단위(중량/수량) KG / U 단위표기
품명 국문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영문 Of a capacity not exceeding 200 ℓ
간이정액환급 10 원 ( 2021-01-01 ~ ) (10,000원당 환급액)
원산지 원산지표시대상 ( Y ) [ 적절표시방법 ]
세율 3.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및 FTA 협정세율 확인 가능
세율적용 우선순위
구분기호 2021년 관세구분
A 8% 기본세율
E1 6%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일반)
R 0% 최빈국특혜관세
U 0% 북한산
FAS1 0% / 0%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2) 중국 (URL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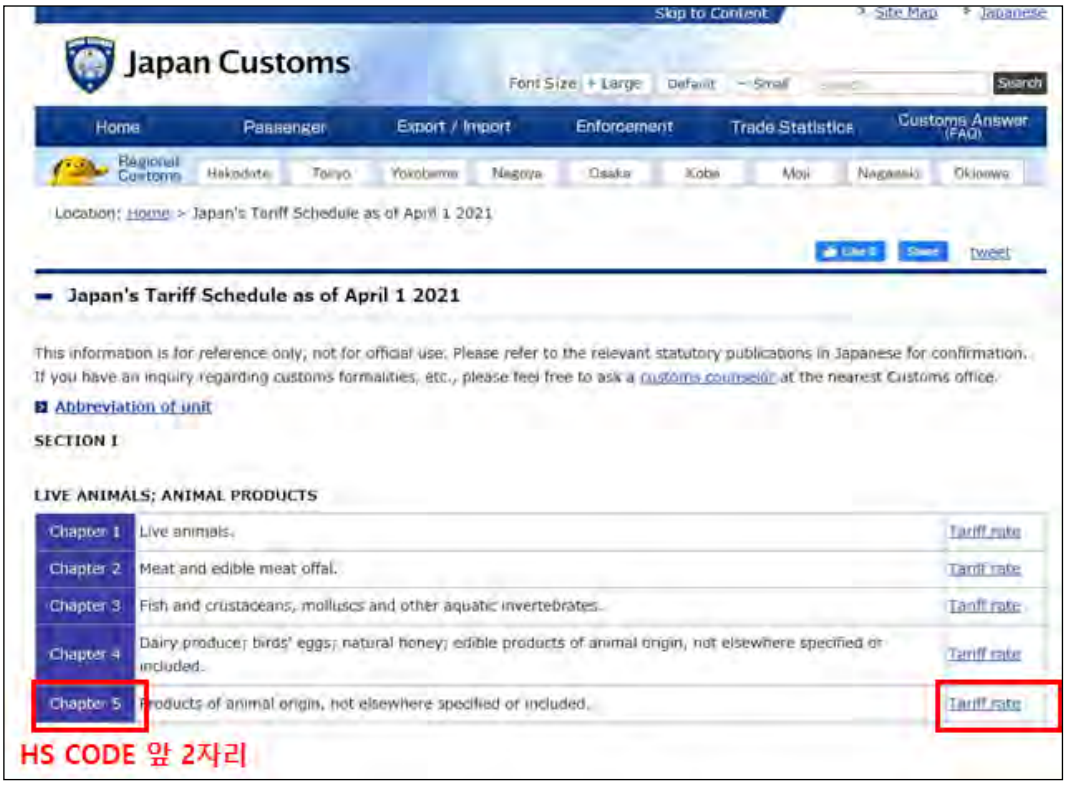
수출물품의 6자리 HS CODE 확인 → 중국 재정부의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접속 →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 클릭하여 PDF파일 다운로드 → PDF 파일 목차에서 「HS CODE 앞 2자리」 클릭하여 상품에 해당하는 HS CODE 6자리 확인 → WTO협정세율, 잠정세율, FTA 협정세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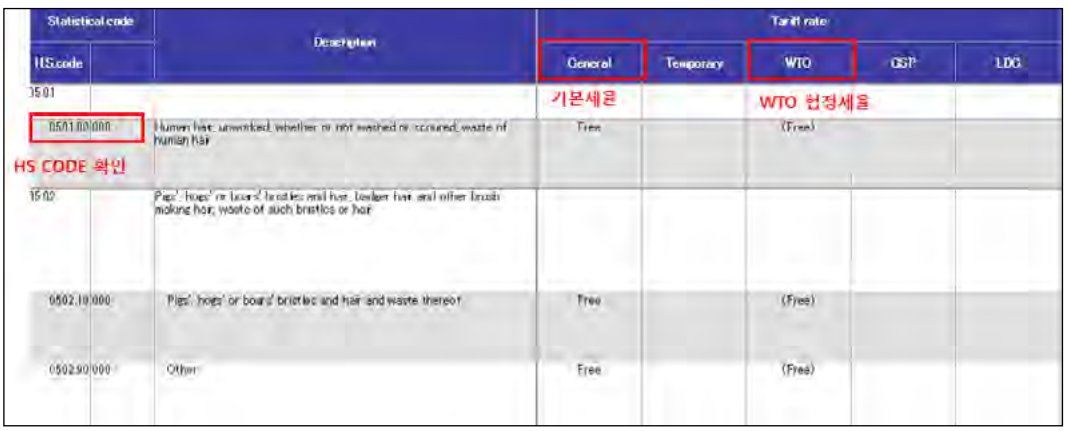


3) 일본 (URL :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1_4/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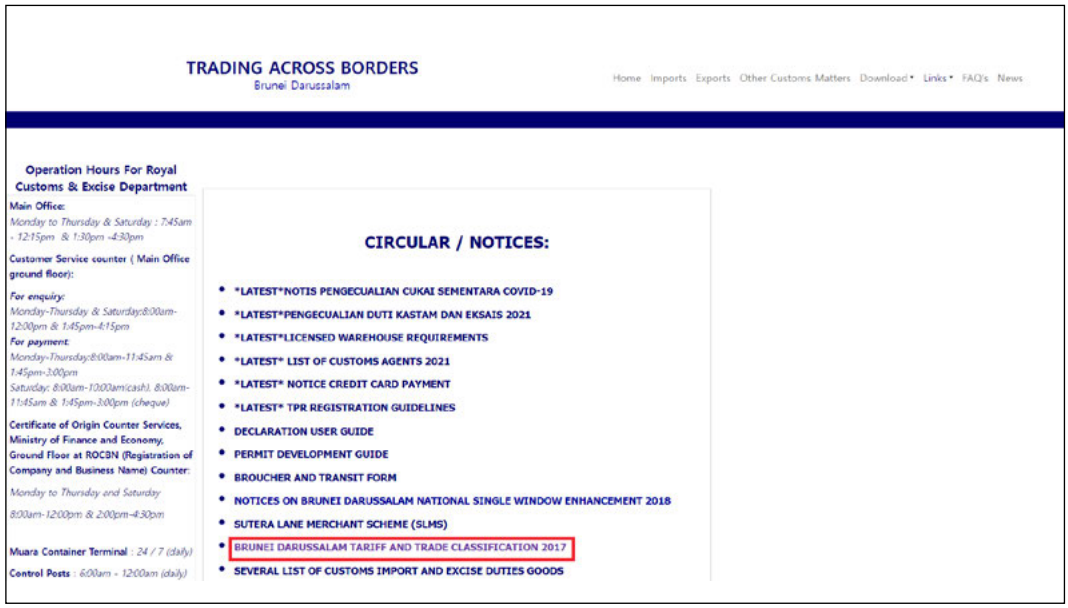
수출품목 HS CODE 6자리 확인 →일본 세관 홈페이지 접속 → HS CODE 2(chapter)자리로 「Tariff rate」 클릭 → HS CODE 6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 「General」「WTO」 또는 「RCEP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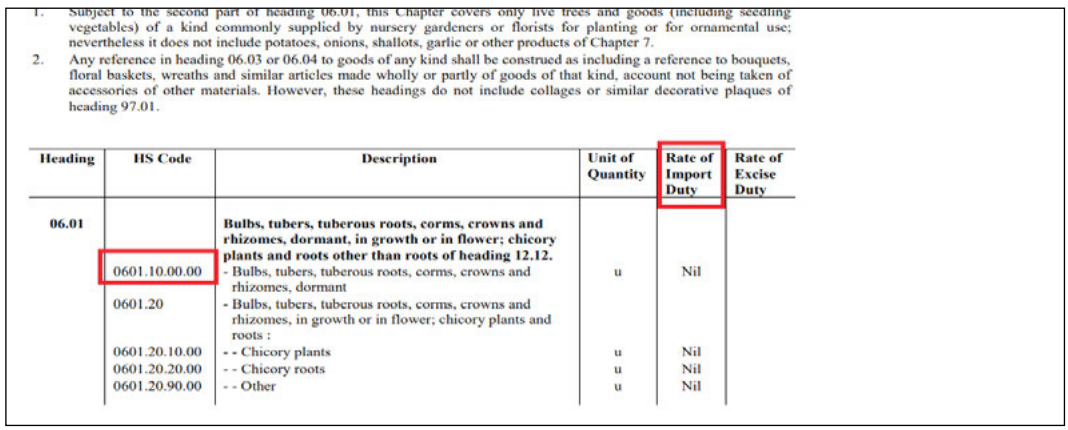


4) 브루나이 (URL : https://tradingacrossborders.mofe.gov.bn/SitePages/home.aspx)

수출품목 HS CODE 6자리 확인 →브루나이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BRUNEI DARUSSALAM TARIFF AND TRADE CLASSIFICATION 2017」 클릭→ HS CODE 10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 「기본세율」 또는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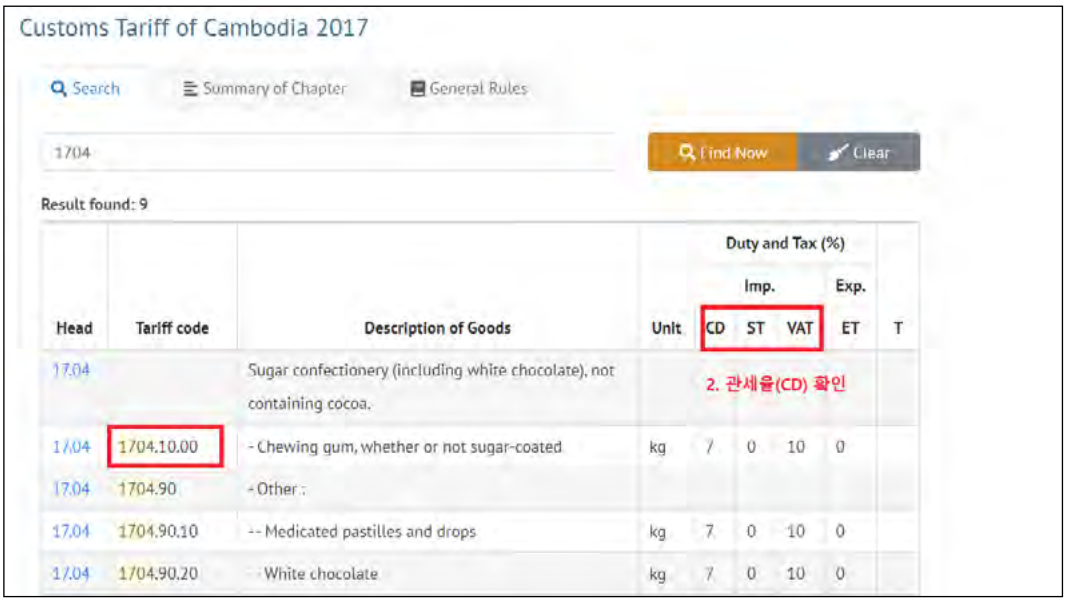
1. Subject to the second part of heading 06.01, this Chapter covers only live trees and goods (including seedling vegetables) of a kind commonly supplied by nursery gardeners or florists for planting or for ornamental use; nevertheless it does not include potatoes, onions, shallots, garlic or other products of Chapter 7.
2. Any reference in heading 06.03 or 06.04 to goods of any kind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bouquets, floral baskets, wreaths and similar articles made wholly or partly of goods of that kind, account not being taken of accessories of other materials. However, these headings do not include collages or similar decorative plaques of heading 97.01.

| Heading | HS Code | Description | Unit of Quantity | Rate of Import Duty | Rate of Excise Duty |
|---|---|---|---|---|---|
| 06.01 | |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other than roots of heading 12.12.** | | | |
| | 0601.10.00.00 | -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 u | Nil | |
| | 0601.20 | -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 | | | |
| | 0601.20.10.00 | - - Chicory plants | u | Nil | |
| | 0601.20.20.00 | - - Chicory roots | u | Nil | |
| | 0601.20.90.00 | - - Other | u | Nil | |

5) 캄보디아 (URL : https://customs.gov.kh/en/publications/6952-customs-tariff-of-cambodia-2017)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캄보디아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기입→ 검색 후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기본세율」 또는「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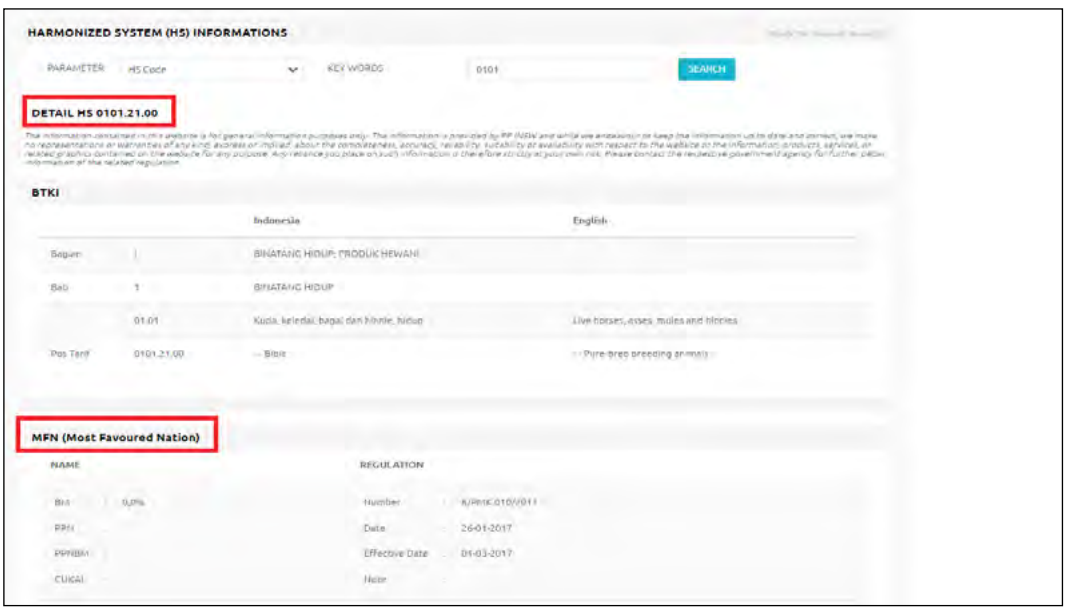


## 6) 인도네시아 (URL : http://intr.insw.g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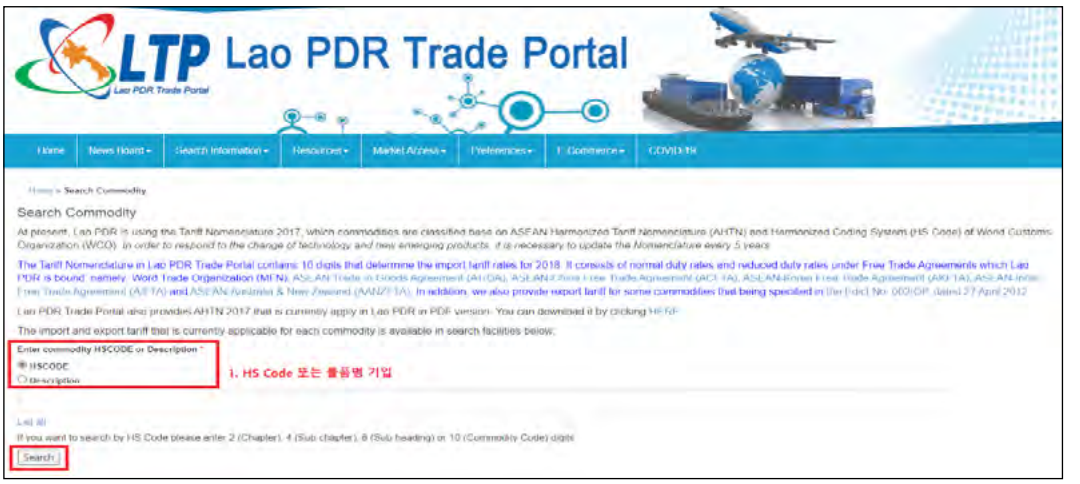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접속 → Indonesia NTR 카테고리에서 HS Code Information 클릭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입력 → 검색 후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기본세율」또는「FTA 협정세율」중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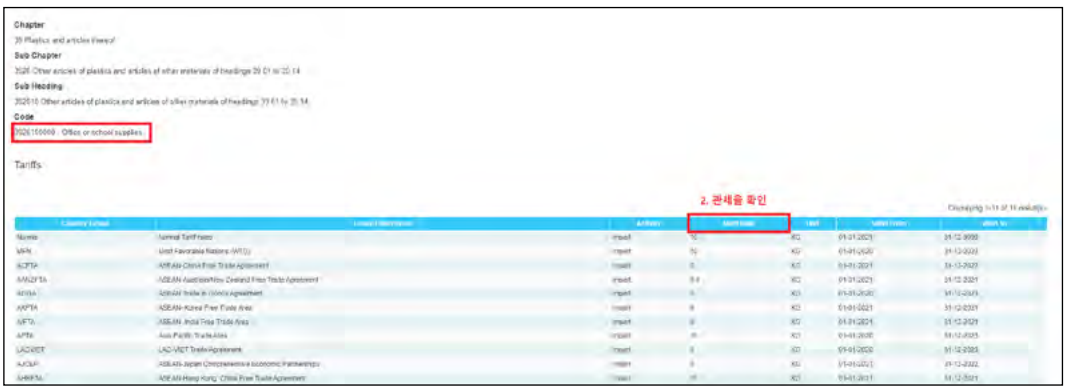


7) 라오스 (URL : https://www.laotradeportal.gov.la/index.php?r=tradeInfo/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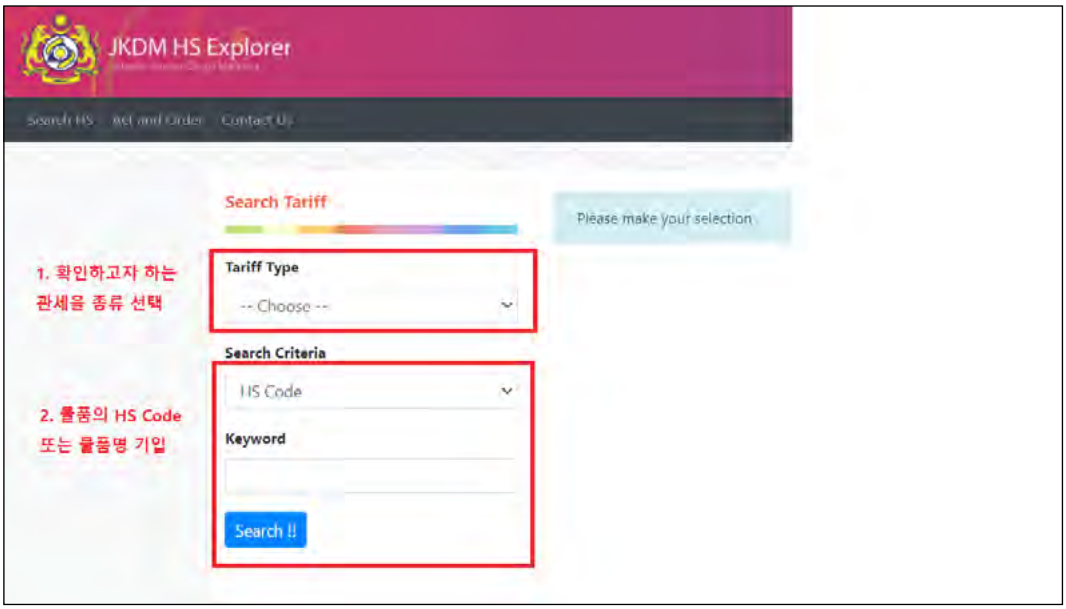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라오스 산업부 홈페이지 접속 → Search Information 항목에서 Search Commodity & Tariff 클릭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입력 → 검색 후 HS CODE 10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MFN세율」또는「FTA 협정세율」중 낮은 세율 적용



## 8) 말레이시아 (URL : http://tariff.customs.gov.my/)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세율 종류 선택 →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기입 → 검색 후 HS CODE 10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PDK」또는「FTA 협정세율」중 낮은 세율 적용






9) 미얀마(URL:https://www.customs.gov.mm/sites/default/files/UpPDF/Customs%20Tariff%20of%20Myanmar%202017.pdf)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미얀마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표 파일 다운로드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찾기 →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 「MFN」 또는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 WCO H.S Code | AHTN Code | Stat. Code | MACCS Code | Description | Unit | MCT Rate (%) |
|---|---|---|---|---|---|---|
| 09.10 | | | | **Ginger, saffron, turmeric (curcuma), thyme, bay leaves, curry and other spices.** | | |
| | | | | - Ginger: | | |
| 0910.11 | 0910.11.00 | 00 | 2 | - - Neither crushed nor ground | kg | 3 |
| 0910.12 | 0910.12.00 | 00 | 6 | - - Crushed or ground | kg | 3 |
| 0910.20 | 0910.20.00 | 00 | 3 | - Saffron | kg | 3 |
| 0910.30 | 0910.30.00 | 00 | 1 | - Turmeric (curcuma) | kg | 3 |
| | | | | - Other spices: | | |
| 0910.91 | | | | - - Mixtures referred to in Note 1(b) to this Chapter: | | |
| | 0910.91.10 | 00 | 6 | - - - Curry | kg | 3 |
| | 0910.91.90 | 00 | 5 | - - - Other | kg | 3 |
| 0910.99 | | | | - - Other: | | |
| | 0910.99.10 | 00 | 3 | - - - Thyme; bay leaves | kg | 3 |
| | 0910.99.90 | 00 | 2 | - - - Other | kg | 3 |

## 10) 필리핀 (URL :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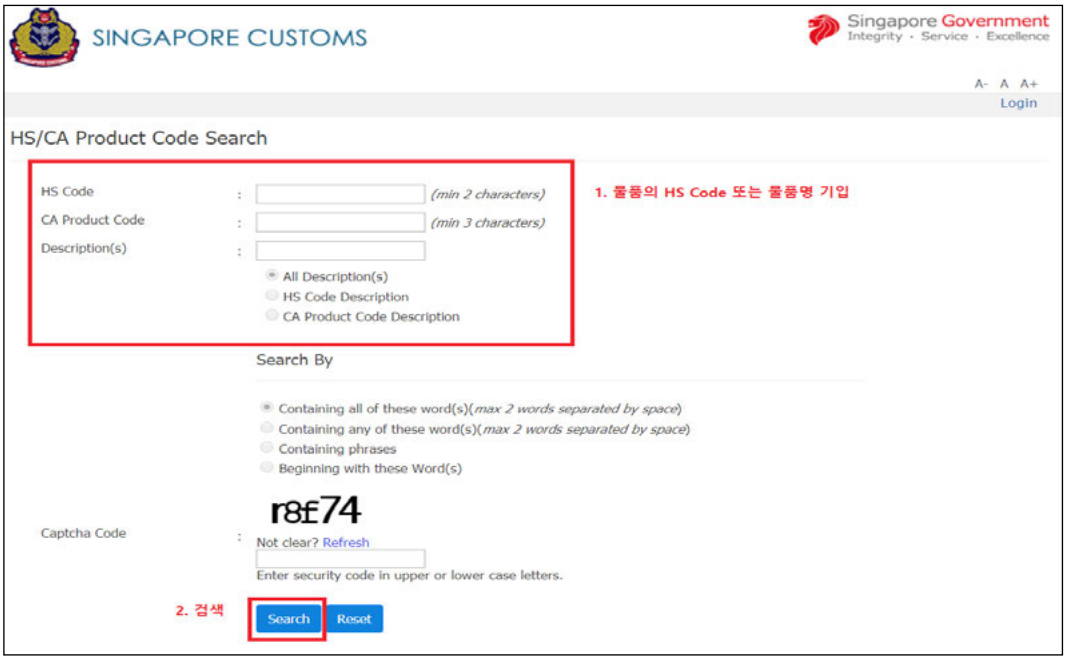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필리핀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세율 종류 선택 →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기입 → 검색 후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 「MFN」 또는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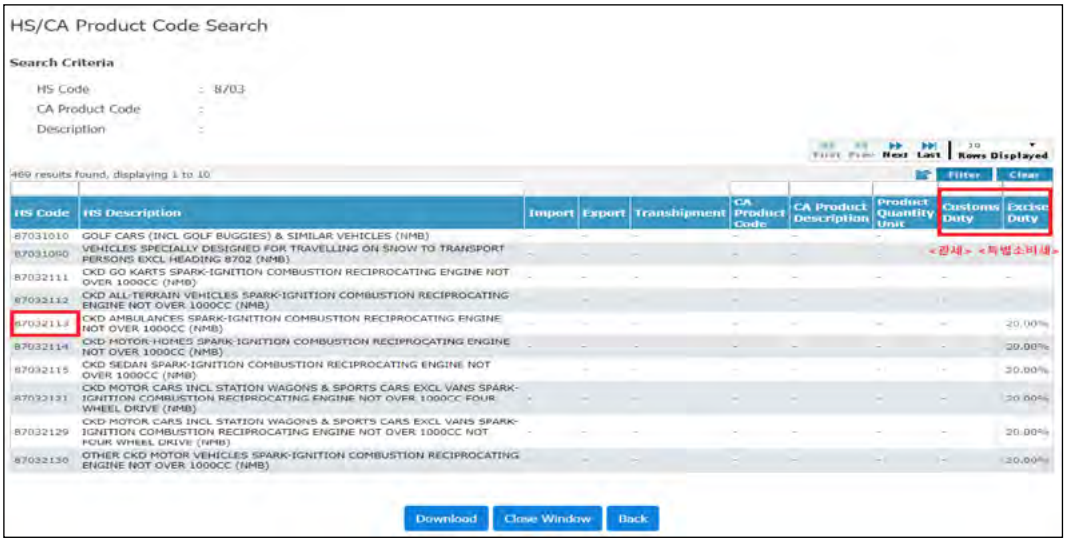





11) 싱가포르 (URL : https://www.tradenet.gov.sg/tradenet/portlets/search/searchHSCA/searchInitHSC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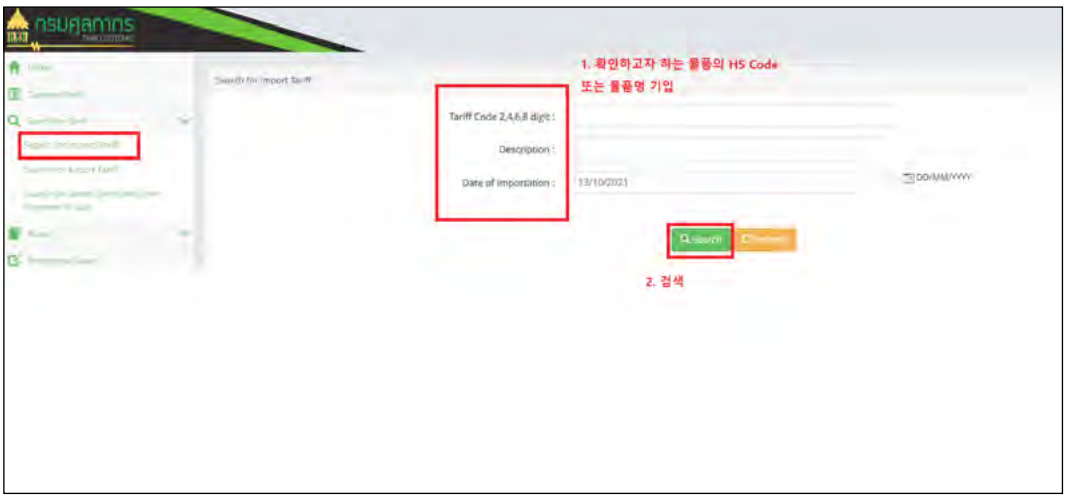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기입 → 검색 후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특별소비세 확인 → 「기본세율」 또는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12) 태국 (URL :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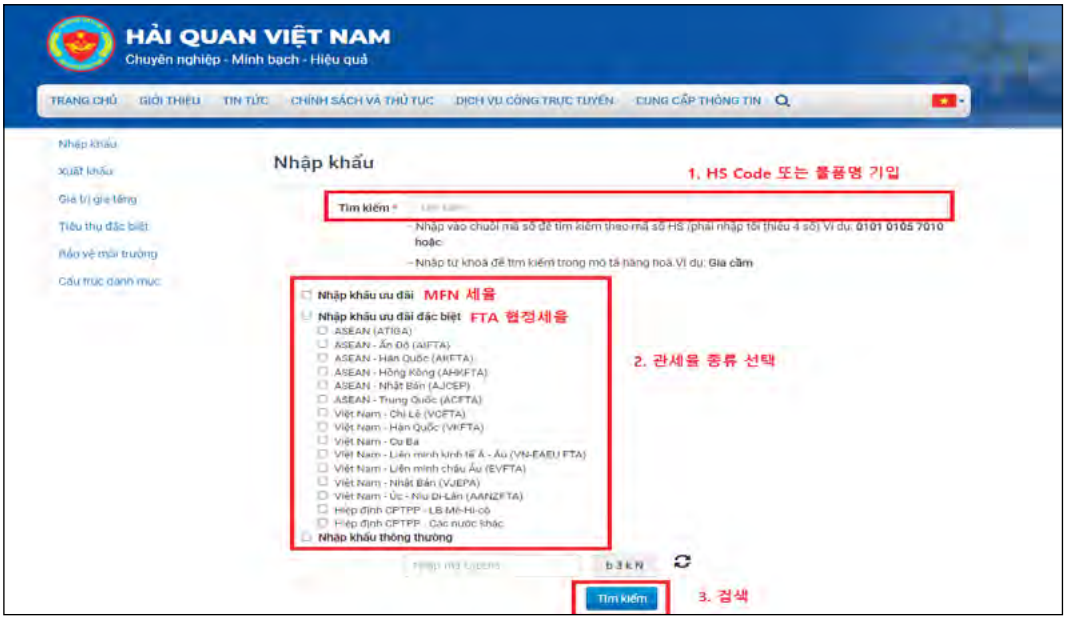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기입 → 검색 후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특별소비세 확인 → 「기본세율」 또는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13) 베트남 (URL : https://tongcuc.customs.gov.vn/portal/index.jsp?pageId=24&id=NHAP_KHAU&name=Nh%E1%BA%ADp%20kh%E1%BA%A9u&cid=120)

수출품목 HS CODE 확인 →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또는 물품명 기입 → 검색 후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관세율, 특별소비세 확인 → 「기본세율」 또는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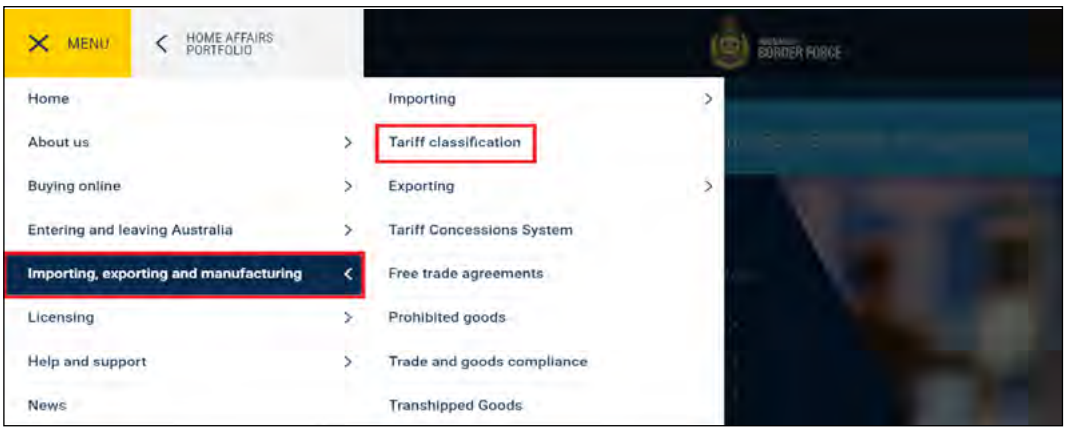



| Mã HS | Mô tả hàng hoá | MFN Ưu đãi | AKFTA |
|---|---|---|---|
| 3926 | Các sản phẩm khác bằng plastic và các sản phẩm bằng các vật liệu khác của các nhóm từ 39.01 đến 39.14: | | |
| 39261000 | - Đồ dùng trong văn phòng hoặc trường học | 20 | 0 |
| 392620 | - Hàng may mặc và đồ phụ trợ may mặc (kể cả găng tay, găng hở ngón và găng tay bao): | | |
| 39262060 | - - Hàng may mặc dùng để chống các chất hóa học, phóng xạ hoặc chống cháy | 10 | 0 |
| 39262090 | - - Loại khác | 20 | 0 |
| 39263000 | - Phụ kiện lắp vào đồ nội thất, trên thân xe (coachwork) hoặc các loại tương tự | 20 | 5 |
| 39264000 | - Tượng nhỏ và các đồ trang trí khác | 20 | 0 |
| 392690 | - Loại khác: | | |
| 39269010 | - - Phao cho lưới đánh cá | 15 | 0 |
| 39269020 | - - Quạt và màn che kéo bằng tay, khung và tay cầm, quai kèm theo, và các bộ phận của chúng | 15 | 0 |
| | - - Các sản phẩm vệ sinh, y tế và phẫu thuật: | | |
| 39269032 | - - - Khuôn plastic lấy dấu răng | 10 | 0 |
| 39269039 | - - - Loại khác | 7 | 0 |
| | - - Các thiết bị, dụng cụ an toàn và bảo vệ: | | |
| 39269041 | - - - Lá chắn bảo vệ của cảnh sát | 5 | 0 |
| 39269042 | - - - Mặt nạ bảo hộ sử dụng khi hàn và trong các công việc tương tự | 6 | 0 |
| 39269044 | - - - Đệm cứu sinh dùng để bảo vệ người ngã từ trên cao xuống | 6 | 0 |
| 39269049 | - - - Loại khác | 6 | 0 |
| | - - Các sản phẩm dùng cho công nghiệ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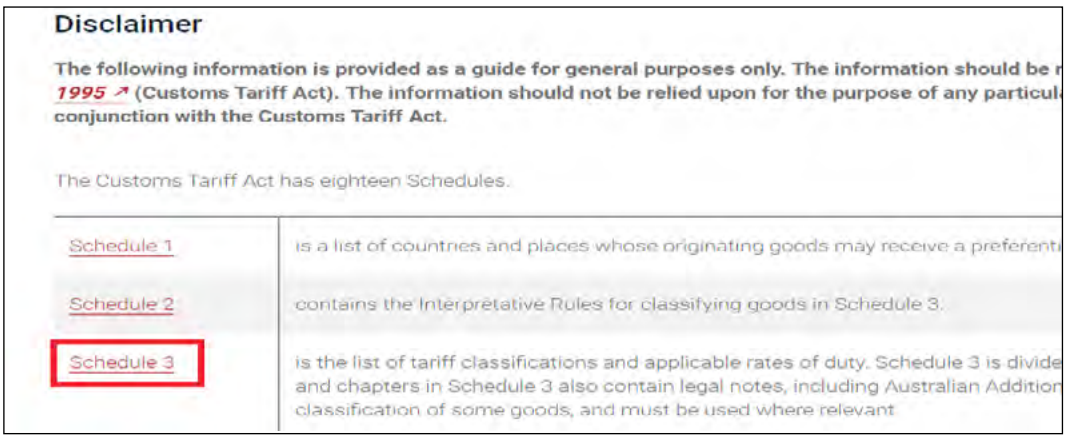
14) 호주 (URL : https://www.abf.gov.au/)

수출품목 HS CODE 6자리 확인 →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접속 → 「Importing, exporting and manufacturing」 항목 클릭한 후 「Tariff classification」을 클릭 → 「Current tariff」의 본문 하단 「Schedule3」 을 클릭 →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Chapter 00 – 분류」를 클릭하여 하위 HS CODE 6자리에 해당되는 관세율 확인




TARIFF CLASSIFICATION
CURRENT TARIFF
This is an online version of the current working tariff
TARIFF CLASSIFICATION OVERVIEW
An introduction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resources
2012 TARIFF CLASSIFICATION
The previous working tariff from 2012, superseded on 1 January 2017
2022 HARMONIZED SYSTEM CHANGES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Harmonized System Changes
TARIFF PUBLIC ADVICE PRODUCTS
Statements that provide general advice about classification and classification issues
TARIFF ADVICE SYSTEM
For importers seeking an advance ruling on the classification of specific goods before importation


Disclaimer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provided as a guide for general purposes only. The information should be
1995 (Customs Tariff Act).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the purpose of any particul
conjunction with the Customs Tariff Act.
The Customs Tariff Act has eighteen Schedules.
Schedule 1
is a list of countries and places whose originating goods may receive a preferent
Schedule 2
contains the Interpretative Rules for classifying goods in Schedule 3.
Schedule 3
is the list of tariff classifications and applicable rates of duty. Schedule 3 is divide
and chapters in Schedule 3 also contain legal notes, including Australian Addition
classification of some goods, and must be used where relevant

15) 뉴질랜드 (URL : www.customs.govt.nz)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Business」 탭 클릭하여 우측 하단의 「Tariffs」항목에서 「Working Tariff Document」를 선택 → 「Working Tariff Document」에서 「View the WTD」를 클릭 → HS CODE 2자리(Chapter) 확인하여 PDF 다운로드 → 6자리 HS CODE에 해당하는 관세율 확인 → 「Normal Tariff」 또는 「Preferential Tariff」 중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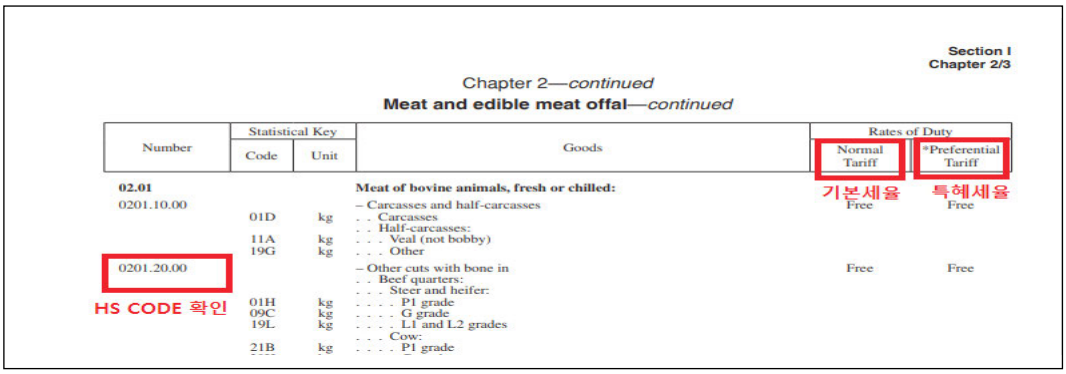






Business
Import
Export
Paying Customs - Business
Excise
Penalties, fines and fees
Tariffs
Working Tariff Document
Working Tariff Document
Subscribe
Tariff concessions
Working Tariff Document
BUSINESS
TARIFF
The Working Tariff Document of New Zealand is a consolidation of two legislative bases, namely – the Tariff Act 1988 and the Customs & Excise Act 2018.
The Working Tariff Document
The Working Tariff Document of New Zealand (WTD) has been reprinted due to the significant changes introduced under the Tariff (CPTPP) Amendment Order 2018. The new WTD implements New Zealand's tariff phasing commitments under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as of 30 December 2018.
The reprint also consolidates the extensive amendments that have been made to the WTD since the last reprint including the removal of outdated preferential tariff rate phasing and a small number of other technical corrections and realignments of a textual nature View the WTD.


Consolidated List of Approvals
Preferential tariffs
Tariff ruling request
Tariff classifications and rates
Free Trade Agreements
Non-tariff barriers
Trade Single Window
Doing business with Customs
Customs-controlled Areas
APEC 2021
Introduction to the Working Tariff Document [PDF 156.57 KB]
Effective 1 July 2021
last updated 07.41am 24 june 2021
WTD
Excise and Excise-equivalent Duties Table [PDF 104.25 KB]
Effective 1 July 2021
last updated 07.41am 24 june 2021
WTD
Section I, Chapters 1 - 5: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PDF 298.83 KB]
Effective 13 December 2020
last updated 01.00am 13 december 2020
WTD
HS CODE 앞 2자리 확인


Section I
Chapter 2/3
Chapter 2—continued
Meat and edible meat offal—continued
Number
Statistical Key
Code
Unit
Goods
Rates of Duty
Normal Tariff
*Preferential Tariff
기본세율
특혜세율
02.01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0201.10.00 –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ee Free
01D kg . . Carcasses
. . Half-carcasses:
11A kg . . . Veal (not bobby)
19G kg . . . Other
0201.20.00 – Other cuts with bone in Free Free
. . Beef quarters:
. . . Steer and heifer:
01H kg . . . . P1 grade
09C kg . . . . G grade
19L kg . . . . L1 and L2 grades
. . . Cow:
21B kg . . . . P1 grade
HS CODE 확인

## STEP 2. 관세 혜택 확인

### 1) RCEP 관세 혜택이란?

RCEP 관세혜택은 상대국 일반세율과 RCEP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RCEP 활용 시 세율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

- MFN 세율 > RCEP 협정세율 : RCEP 세율 활용 실익 있음
- MFN 세율 ≤ RCEP 협정세율 : RCEP 세율 활용 실익 없음

### 2) RCEP 관세 혜택 예시

- 수입국의 일반세율 20%, RCEP 협정세율 16%인 경우
  → 4%의 관세혜택 발생
- 수입국의 일반세율 5%, RCEP 협정세율 5%인 경우
  → RCEP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RCEP을 활용하는 경우의 세율이 동일하므로 세율 측면에서 RCEP을 활용할 실익이 없음

### 3) RCEP 활용 실익 판단

- 현재 우리나라는 RCEP 참여상대국 14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한 상태임
-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경우, RCEP과 기존 협정 간의 특혜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간 적용받지 못했던 FTA 특혜세율을 RCEP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이때 동일 협정을 적용받는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RCEP 체결국 중 어느 국가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관세 양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세율 적용 우선순위 확인방법

TradeNAVI 해외관세율 조회

URL: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76






### 4) RCEP 관세 양허세율 확인방법

RCEP 협정문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URL : https://www.fta.go.kr/rcep/doc/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협정문 및 부속서
활용정보
언론동향
참고자료
FAQ
FTA 강국, KOREA
협정문 및 부속서
> 부속서
협정문
부속서
부속서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관세 양허표 파일 다운로드
KOREAN
ENGLISH
부속서 I 관세 양허표
일반 주주
투주
브루나이
관세 양허표
투주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
투주
대 ASEAN 양허표
대 호주 양허표
대 중국 양허표
인도네시아
대 일본 양허표

예1)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경우

부속서 I
관세 양허표
캄보디아

| AHTN 코드 | 품목명 | 기준 세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
| **01** | 살아 있는 동물 | | | | | | | | | | | |
| **01.01** |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 및 버새 | | | | | | | | | | | |
| | - 말 | | | | | | | | | | | |
| 0101.21.00 | - - 번식용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0101.29.00 | - - 기타 | 15 % | 15 % | 13.5 % | 13.5 % | 12 % | 12 % | 10.5 % | 10.5 % | 9 % | 9 % | 7.5 % |
| **0101.30** | - 당나귀 | | | | | | | | | | | |
| 0101.30.10 | - - 번식용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0101.30.90 | - - 기타 | 15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0101.90.00 | - 기타 | 15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01.02** | 살아 있는 소 | | | | | | | | | | | |
| | - 축우(畜牛) | | | | | | | | | | | |
| 0102.21.00 | - - 번식용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0102.29** | - - 기타 | | | | | | | | | | | |
| 0102.29.10 | - - - 숫소(황소를 포함한다) | 15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0102.29.90 | - - - 기타 | 15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 - 버팔로 | | | | | | | | | | | |
| 0102.31.00 | - - 번식용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 0102.39.00 | - - 기타 | 15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0 % |

RCEP 협정문 부속서 1.의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
➞ 기준세율과 이행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철폐 또는 인하되는 관세율 확인
*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U"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

예2)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HS 0810.10)

부속서 I
한국 관세 양허표
제1절: 아세안 회원국

| HSK 2014 | 품목명 | 기준 세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11 |
|---|---|---|---|---|---|---|---|---|---|---|---|---|---|
| **01** | **살아 있는 동물** | | | | | | | | | | | | |
| **0101** |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 | | | | | | | | | | | |
| 0101.2 | 말 | | | | | | | | | | | | |
| **0101.21** | **번식용** | | | | | | | | | | | | |
| 0101.21.10.00 | 농가 사육용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 |
| 0101.21.90.00 | 기타 | 8.0% | 7.2% | 6.4% | 5.6% | 4.8% | 4.0% | 3.2% | 2.4% | 1.6% | 0.8% | 0.0% | 0 |
| **0101.29** | **기타** | | | | | | | | | | | | |
| 0101.29.10.00 | 경주말 | 8.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 |
| 0101.29.90.00 | 기타 | 8.0% | 7.5% | 6.9% | 6.4% | 5.9% | 5.3% | 4.8% | 4.3% | 3.7% | 3.2% | 2.7% | 2 |
| **0101.30** | **당나귀** | | | | | | | | | | | | |
| 0101.30.10.00 | 번식용 | 8.0% | 7.2% | 6.4% | 5.6% | 4.8% | 4.0% | 3.2% | 2.4% | 1.6% | 0.8% | 0.0% | 0 |
| 0101.30.90.00 | 기타 | 8.0% | 7.5% | 6.9% | 6.4% | 5.9% | 5.3% | 4.8% | 4.3% | 3.7% | 3.2% | 2.7% | 2 |
| 0101.90.00.00 | 기타 | 8.0% | 7.2% | 6.4% | 5.6% | 4.8% | 4.0% | 3.2% | 2.4% | 1.6% | 0.8% | 0.0% | 0 |
| **0102** | **살아 있는 소** | | | | | | | | | | | | |
| 0102.2 | 축우(畜牛) | | | | | | | | | | | | |

RCEP 협정문 부속서 1.의 한국 대 ASEAN 양허표
➞ 기준세율과 이행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철폐 또는 인하되는 관세율 확인
*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U"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

## STEP 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1) 원산지 기준의 개념

| 원산지기준 | | | 의미 | 비고 |
|---|---|---|---|---|
| 일반 기준 | 기본 원칙 | 완전생산기준 | 당사국내에서 완전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 | 협정문 제3.2조, 제3.3조 |
| | | 역내가공원칙 | 물품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중단없이 가공이이루어져야 함, | 협정문 제3.2조, 부속서 3-가 |
| | | 충분가공원칙 | 단순, 경미한 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 미인정 | 협정문 제3.6조 |
| | | 직접운송원칙 |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면 원산지 미인정<br>다만 상품이중간경유국의 관세당국 통제 하에 있고, 하역/재선적/보관/상품의 양호한 상태 유지를 위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 협정문 제3.15조 |
| | 주요 분야별 특례 기준 | 누적기준 |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국에서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을 원산지로 여김 | 협정문 제3.4조 |
| | | 최소기준 | -제1류~제97류: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가격(FOB)의 10% 초과하지 않을 것<br>-제50류~제63류: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중량의 10% 초과하지 않을 것 | 협정문 제3.7조 |
| 실질적변형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 PSR) | | 세번변경기준 | 완제품과 투입한 역외 원재료간 HS CODE 변경여부로 원산지 결정 | 부속서 3-가 |
| | | 부가가치기준 | 역내 가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정도로 원산지 결정 | 협정문 제3.5조, 부속서 3-가 |
| | | 조합기준 | 상기 실질적 변형기준의 조합형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인정 | 예) CTH and RVC 40% |
| | | 선택기준 | 상기 실질적 변형기준의 선택형으로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원산지 인정 | 예) CTH or RVC 40% |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경우, 품목별(HS CODE)별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고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제조,가공국을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FTA 체결국가간 수출입 물품은 무조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X)
→ FTA 관세혜택은 조건부로, 협정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이 충족한 물품에 한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모두 한국산이다. (X)
→ 협정에서 규정한 역내산(원산지) 인정조건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 2) RCEP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RCEP 협정문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URL : https://www.fta.go.kr/rcep/doc/1/



› 협정문 상세보기

| 제목 | KOREAN | ENGLISH |
|---|---|---|
| 서문 | | |
| 제 1 장 | | |
|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 | |
| 제 2 장 | | |
| 상품 무역 | | |
| 제 3 장 | | |
| 원산지 규정 | | |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 | |

예시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제12부<br>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 | |
| 64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 | 64.01 | |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64.02 |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64.03 |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STEP 4. 원산지 판정

### 1) 원산지 판정 사례(세번변경기준)

Q. 말레이시아 소재 중소기업이 인도 고무를 수입하여 신발 바깥바닥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데, RCEP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말레이시아 소재 / 한국 수출

1. 원재료 : 인도 수입 → 완전생산기준 충족 안됨

2. 신발 바깥바닥 생산 : 실질적 변경여부 확인

→ 신발 바깥바닥 (최종재)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① HS CODE : 6406.20

②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또는 RVC 40%[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최종재와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HS CODE) 비교

| 구분 | 류 | 호 | 소호 |
|---|---|---|---|
| (최종재) | 64 | 06 | 20 |
| (원재료) | 40 | 02 | 99 |
| | (2단위) | (4단위) | (6단위) |
| | CC | CTH | CTSH |

• 역외산 원재료 중에 세번 앞자리 2자리에 '64'가 있으면 원산지 불충족

## 2) 원산지 판정 사례(부가가치기준)

Q. 중국 소재 중소기업이 자동차 배기관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데, RCEP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중국 소재 / 한국 수출

1. 자동차 배기관 생산 : 실질적 변경여부 확인

→ 자동차 배기관(최종재)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① HS CODE : 8708.92

② RVC 40% or CTH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자동차 배기관 FOB 가격 : 600원
- 최종재에 대한 BOM

| 자재명 | 세번부호 | 원재료가격 | 원산지 |
|---|---|---|---|
| A | 7218.10 | 150 | 중국 |
| B | 4002.19 | 120 | 인도 |
| C | 7219.11 | 30 | 중국 |
| D | 7221.00 | 50 | 중국 |

- RVC 기준 충족 여부 검토[공제법] → RVC법으로 계산한 값이 40% 이상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text{RVC} = \frac{\text{FOB}-\text{비원산지재료 가치}}{\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frac{480}{600} \times 100 = 80\%$$

## 3) 원산지 증빙서류

* 개념 :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 등
* 종류 :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기타 원산지입증서류 등

##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원제품 품명:
모델명:
적용협정:
원재료 지정내역

| 번 | 품명(규격명) | 세번부호 (HS No) | 원산지 | 소요량 | 단가 | 가격(액) | 구성비 | 제조자 | 구매처 | 입증서류 | 업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재산 | | | | | | | | |
| | | | 협력산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관련업무 제출을 위하여 작성,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 )

- 원재료, 품명, HS CODE, 소요량, 단가, 가격, 구매처, 원산지 지위, 입증서류 등 기재
-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BOM상의 원재료는 매입한 원재료만을 기재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제조공정도

□ 제품명 : (HS : )
□ 모델규격 :

| 공정명 | (1) 000 공정 | | (2) 000 공정 | | (3) 000 공정 | | (4) 000 공정 |
|---|---|---|---|---|---|---|---|
| 세부설명 | | ⇒ | | ⇒ | | ⇒ | |
| 투입 원재료 | | | | | | | |

2020. 01. 01

작성자 : (서명)

직인생략

- 수출(생산)제품이 역내에서 어떠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 수출자·생산자 | | | | |
|---|---|---|---|---|
| 1. 수출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 |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
| 2. 생산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 |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

| 물 품 명 세 | | | | |
|---|---|---|---|---|
| 3. 품명/규격 | | | 4. 품목번호(HS No.) | |
| 5. 물품가격 | 가격조건 | 공 장 도가격(EXW) [ ] 본선인도가격(FOB) [ ] | 6. 원산지결정기준 | |
| | 금 액 | | 7. 자유무역협정명칭 | |
| 8. 주요생산 공 정 | | | | |

| 원재료명세서 | | | | | | |
|---|---|---|---|---|---|---|
| 9. 연번 | 10. 재료명 | 11. 품목번호 (HS No.) | 12. 원산지 | 13. 가 격 수 량 | 13. 가 격 가 격 | 14. 공급자 (생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합 계 | | 원산지재료(국산) | | | | |
| | | 비원산지재료(수입산) | | | | |
| | | 합 계 | | | | |

|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 | | |
|---|---|---|---|
| 16.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부가가치비율 : % ) | |
| 19. 결합기준 | 예 [ ] 아니오 [ ] | 20. 특정공정기준 | 예 [ ] 아니오 [ ] |
| 21. 역외가공기준 | 예 [ ] 아니오 [ ] | 22. 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 23. 누적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24. 직접운송 여부 | 예 [ ] 아니오 [ ] |
| 25. 기 타 | 예 [ ] 아니오 [ ] | 26. 원산지 결정 | 충족 [ ] 불충족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호 및 주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04]

- 수출자, 수입자, 수출용 품명세, 원재료 명세, 제조공정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FTA 활용이 가능한 역내산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서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 | | |
|---|---|---|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 4. 연번 (S/N) | 5. 자유무역협정명칭 (Name of FTA) | 6. 품목번호 (HS No.) | 7.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 |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년월일-년월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
|---|---|---|---|---|---|---|---|---|---|
| | | | | | | 충족 (Y) | 미충족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05]

- 1) 원산지 상품을 매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취, 또는
  2) 투입원재료의 RCEP 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취

## STEP 5. 원산지증명서 작성

### 1) FTA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수출, 수입 거래 시 FTA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

- 특정물품이 한국에서 수출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Non-preferential C/O)과는 상이

### 2) 작성방식

| | |
|---|---|
| 발급방식 | • 기관발급<br>• 인증수출자 자율발급<br>•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 양식 | 부속서 3-나의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영문 서식 |
| 작성주체 | • 원산지증명서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br>• 원산지신고서 : 인증수출자, 협정문 제3.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 원산지증명서 요건 | 1)당사자들에 의하여 결정될 서식으로 작성됨<br>2)고유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를 포함<br>3)영어로 작성<br>4)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 포함 |
| 원산지신고서 요건 | 1)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라 작성<br>2)영어로 작성<br>3)증명인의 이름 및 서명 포함<br>4)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 포함 |
| 유효기간 |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

### 3) 최소 정보 요건[협정문 부속서 3-나]

| | |
|---|---|
| 원산지 증명서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br>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br>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br>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br>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br>바. 원산지 결정 기준<br>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신고<br>아.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br>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br>차.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br>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br>타. 상품의 수량<br>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 원산지 신고서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br>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br>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br>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6단위)<br>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br>바. 고유 참조번호<br>사. 원산지 결정 기준<br>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br>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br>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br>카. 상품의 수량<br>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 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 4) 협정세율 적용

- 원칙 –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특혜관세 신청
- 예외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특혜관세 신청 가능

### 5)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 다만, 수입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함.

## STEP 6. FTA 관세혜택 신청 절차

###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후 수입통관(일반적인 절차)

①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 ② 수입신고 → ③ FTA 특혜관세 적용

### 수입통관 후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사후신청 절차)

① 수입신고 → ② MFN 실행관세 납부 → ③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 ④ FTA특혜관세 적용 및 환급 (수입신고 수리일 1년 이내)

- RCEP 협정문 3장 제 20조에 따른 특혜관세 부여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
  ② 신고서 작성 당시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
  ③ 수입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진정 등본을 수입 당사자에 제공

- 한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 가능하며, 납부한 MFN 실행 관세와 FTA 특혜관세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STEP 7. 관련서류 보관

- RCEP 협정문 3장 제27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수입자 ·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함을 규정.

### 수입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생산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시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 수출자 보관서류

- 생산자 보관서류 외
-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자료: FTA 특례법 시행령 10조

## STEP 8. 원산지 검증

### 1) 원산지 검증의 개념

특혜 적용 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

### 2) RCEP 원산지 검증[협정문 제3.24조]

| | | |
|---|---|---|
| 검증 | 방법 | • (원칙) 간접검증<br>• (예외) 직접검증 |
| | 주체 | • 직접검증(수입국 세관)<br>• 간접검증(수출 C/O 발급기관 또는 수출국 세관) |
| 회신 | 주체 | • 간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수출국 세관<br>• 직접검증 동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국 세관<br>•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
| | 기간 | • 간접검증: 요청 수령일로부터 30~90일<br>• 직접검증 동의: 요청 수령일로부터 30일<br>• 직접검증: 요청수령일로부터 90~180일 |
| | 미회신 조치 | 특혜세율 적용 제한 |

### 3) 원산지 검증 주요 항목

| 항목 | 예시 |
|---|---|
| 품목분류 |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는지 등 |
| 원산지 결정기준 | 수출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등 |
|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는지 등 |
| 협정관세 적용신청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는지 등 |
| 직접운송원칙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었는지 여부 등 |
| 서류보관 |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 |

## 2. RCEP 협정문 주요 특징

### 1) 인증수출자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협정문 제3.16조, 제3.21조]

- 그 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 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수 있음.

### 2) 누적기준 허용[협정문 제3.4조]

- 누적 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임.
-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3) 연결원산지증명서[협정문 제3.19조]

- 연결 원산지 증명이란,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중간 경유국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함.
- RCEP에서는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세요건 협정문 제3.19조에 규정.

### 4) 제3자 송장[협정문 제3.20조]

- 송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입 당사자가 특혜관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제3자 송장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상품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Ⅲ RCEP 협정의 차별점

## 1. 한-RCEP간 기 체결 FTA현황

우리나라와 기존 RCEP참여국과 총 6건의 FTA가 발효 중.

| 국가 명 | 발효일 |
|---|---|
| 싱가포르 | 2006.03 |
| 아세안 | 2007.06 |
| 호주 | 2014.12 |
| 중국 | 2015.12 |
| 베트남 | 2015.12 |
| 뉴질랜드 | 2015.12 |

## 2. 기존 FTA 협정과 주요 차별점

- RCEP 체결국가와 체결한 FTA 및 RCEP과의 원산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주요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 확대 및 다국 누적적용으로 인한 체결국가 간 무역 증가임.

### 1) 단일 원산지결정기준

- 기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마다 상이하게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했으며, 이는 동일 물품임에도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야기하였음.
- RCEP이 발효되는 경우 단일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 역내 회원국 간 무역의 효율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이 FTA 활용함에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편의성이 제고됨.
- 기체결한 FTA 협정과 RCEP 협정세율이 동일한 경우, 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유리한 협정을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음. 특정품목이 기체결한 FTA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나, RCEP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기 용이하여 역내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RCEP 협정문 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HS Code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음.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정의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40) |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함. |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CTC)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CTC)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CTC)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 완전생산기준(WO) |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규정이 완전생산기준(WO)인 경우, 그 상품은 제3.2조(원산지 상품) 나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됨으로써,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음. |
| 화학반응(CR) | 화학반응이 당사자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화학반응의 산물인 모든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화학반응"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임. |

## 2)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가능성

- 아세안·싱가포르·중국·베트남과의 FTA협정 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으로 국가관세당국의 심사를 거친 후 발급이 가능.
- 뉴질랜드·호주와의 FTA협정 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자율발급으로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음.
  다만, 한-호주 FTA의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하여 기관발급 대상임.
- RCEP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 시 자율발급이 가능함.

## 인증수출자

### 1) 개요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인증수출자 취득 관련 관세청 지원 내용은 [Ⅳ. RCEP 협정 활용 TIP]에서 상세 설명.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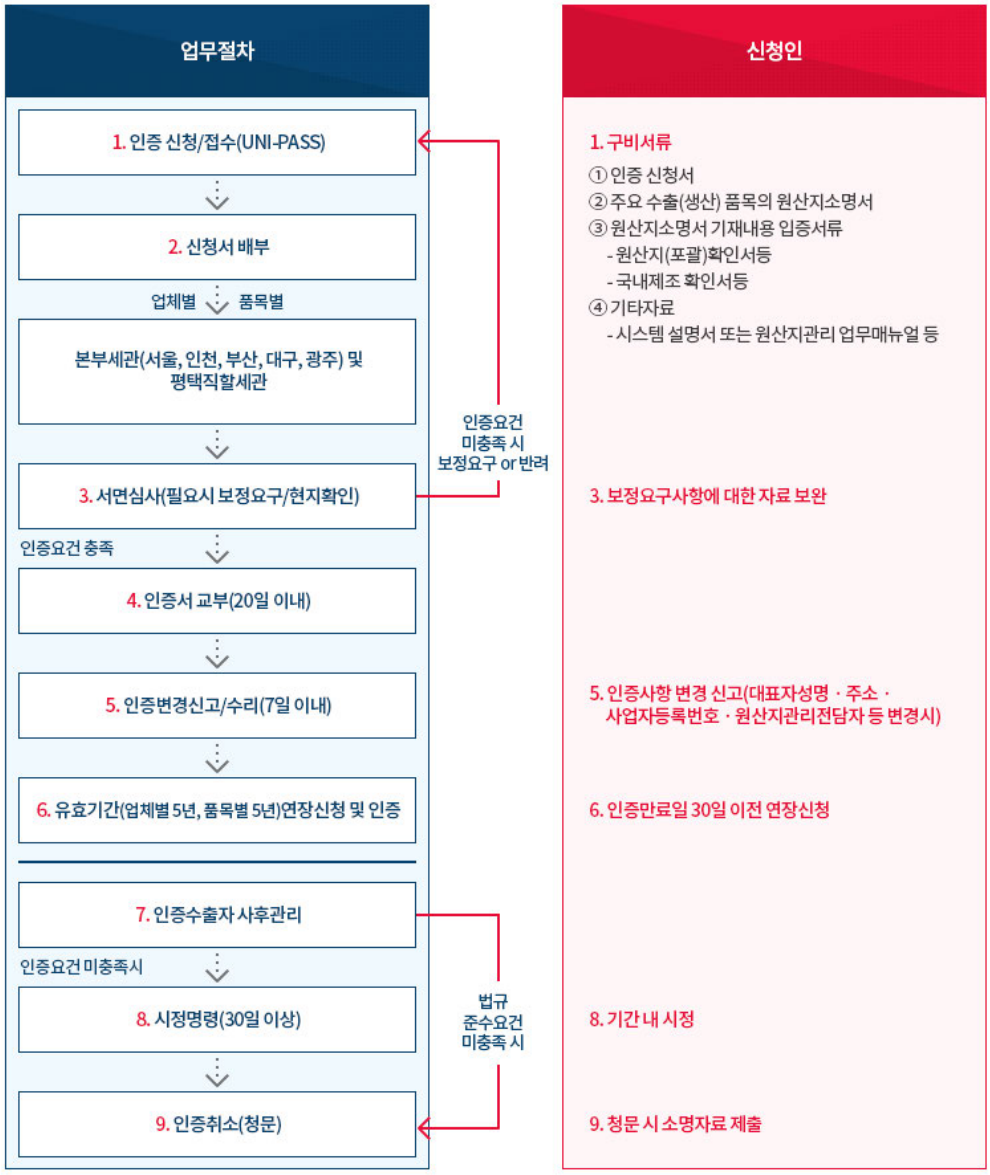
| 구분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 받은 협정 별,HSCODE6단위 |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 인증기준 | 협정 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CODE 6단위 별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 2)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 구분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
| 인증요건 |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br>•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br>•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br>•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br>•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br>•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 •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br>•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br>•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 혜택범위 | 전체 협정, 전체 품목 | 인증 심사 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
| 유효기간 | 5년 | 5년 |
| 인증혜택 |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모든 협정에 적용) |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

## 3)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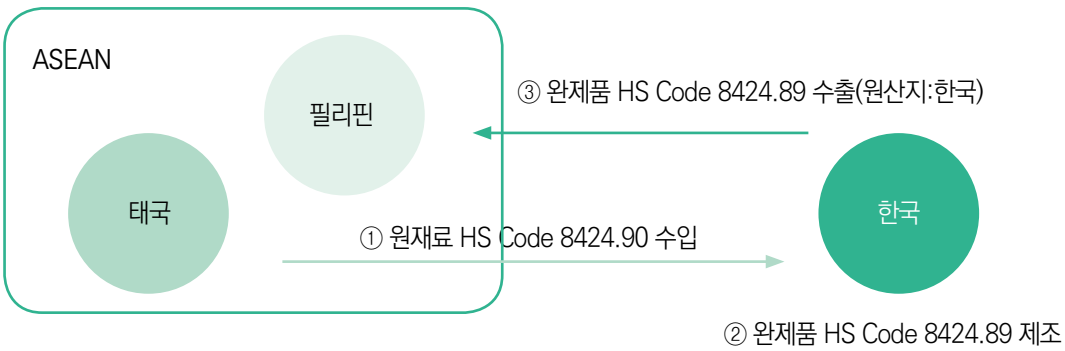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FTA포털)



### 2) 누적기준 中 다국 누적 가능성

- 원산지 누적 조항이란, 당해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 투입요소를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체약 상대국의 원재료도 자국산으로 인정하므로 원산지 영역 확대 및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누적조항 사례




- 현재 한-아세안 FTA에 한하여 다국 누적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RCEP체결 시 체결국가인 아세안국(10개국)과 非아세안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간 누적조항으로 포괄적인 누적조항 적용을 통한 협정 적용이 가능함.

### 3) 기존 FTA 협정과 RCEP 비교 분석표

| 구분 | | RCEP | 아세안 | 싱가포르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호주 |
|---|---|---|---|---|---|---|---|---|
| 원산지 증명서 | 발급 방식 | 기관발급 (인증 수출자 자율발급) | 기관발급 | | | | 자율발급 | 자율발급, 기관발급 |
| | 발급 주체 | · 기관 (관세당국) · 자율 (수출자/ 생산자 | · 아세안 (정부기관) · 한국 (세관,상의) | · 싱가포르 (관세당국) · 한국 (세관/상의 등) | · 중국 (해관/국제 무역진 위원회) · 한국 (세관/상의) | · 베트남 (산업 무역부) · 한국 (세관,상의) | · 수출자/ 생산자 | · 자율 (수출자/ 생산자) · 호주 (상의, 산업협회) |
| | 유효 기간 | 1년 | 1년 | | | | 2년 | |
| | 제출 면제 한도 | 200달러 이하 | FOB 2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700달러 이하 | FOB 6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
| 역외가공허용 | | 협의중 | O, 개성공단 | | | O | | |
| 누적 기준 | 재료 누적 | O | O | | | | | |
| | 공정 누적 | X | X | O | X | | O | |
| 미소 기준 | 일반 품목 | FOB 10% 이하 | FOB 10% 이하 | 관세가격 10% 이하 | FOB 10% 이하 | | | 조정가치 10% 이하 |
| 중간재 | 인정 여부 | O | X | O | | | | |
| | 대상 물품 | 역내생산품 | X | 자가생산품 | 역내생산품 | | | |
| | 지정 의무 | X | X | O | X | | | |
|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 세번 변경 기준 | 원산지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 | | | | |
| | 부가 가치 기준 | 원산지별 구분 계상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별 구분 계상 | | | | |

## 3. 일본과의 최초 FTA 활용방안

### 1) 일본의 수입통관절차

| | |
|---|---|
| STEP 1 | 출항 전 보고 및 적하목록 제출 |
| STEP 2 | 수입신고 |
| STEP 3 | 심사 및 검사 (서류 심사) |
| STEP 4 | 심사 및 검사 (물품 검사) |
| STEP 5 | 관세 등 납부 |
| STEP 6 | 수입허가 및 물품 반출 |

① 출항 전 보고 및 적하목록 제출

-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공 컨테이너, 벌크 화물 제외)의 적하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근거리 지역의 경우 선적항 출항 전까지)까지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함.
  -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과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NACC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
  - NACCS센터와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NACCS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예: KTNET, KLNET, Cyberlogitec 등)를 경유해 접속하여 보고. 이 경우 신청자 ID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보고 또는 신청자 ID 발급신청: http://www.naccscenter.com/afr/indexj.html)
- 적하목록은 외국무역선이 선적항에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함.

② 수입신고

- 항공회사,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함.

• 수입자는 항공회사, 선박회사에서 운송 계약과 관련되는 서류를 인수받아 수출자가 보내 온 송품장 등과 함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

*관할 세관 확인 : http://www.customs.go.jp/hozei/zouchi.htm

• 수입신고는 화물의 수입자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업자가 수입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자는 수입통관을 할 수 없음.

• 신고는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함.

- NACCS를 통한 신고: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 자료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NACCS를 통하지 아니한 신고: 수입화물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수입통관 시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
- 송품장
- 선하증권
- 운임·보험료명세서
- 포장명세서
- 품목에 따라서 타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서, 원산지증명서, 감면신청서 등

③ 심사 및 검사 (서류 심사)

•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하며, 심사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간이심사 : 위험도가 가장 낮은 건에 대해서는 통관정보시스템(NACCS)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내용만을 검토함.
- 서류심사 : 중간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건은 종이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를 제출하도록 함.
- 검사 : 위험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에 더하여 현품을 검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통관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는 회사 내부 검토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④ 심사 및 검사 (물품 검사)

- 수입검사의 목적은 신고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확보하고 수입 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권총 등 위험물 적발 등에 있음.
- 검사 내용은 크게 아래에 목차에 따름.
  - 관세, 내국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들 세금을 납부했을 것(납기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 물품이 아편, 마약, 기타 수입 금지품이 아닐 것
  - 타 법령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을 취득할 것
  - 물품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 등

⑤ 관세 등 납부

- 세관에서 심사가 완료된 후 납부서(또는 납부번호가 기재된 납부번호 통지 정보)를 교부하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하면 됨.
- 별도의 납부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화물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음.
- 납부 방법은 아래 3가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 화주가 선택할 수 있음.
  - 세관에서 교부한 납부서에 의한 납부: 세관 창구,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인지로 납부할 수 있음.
  - 세관에서 통지한 납부번호에 따른 납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금융기관의 ATM 등을 통한 납부할 수 있음.
  - EDI 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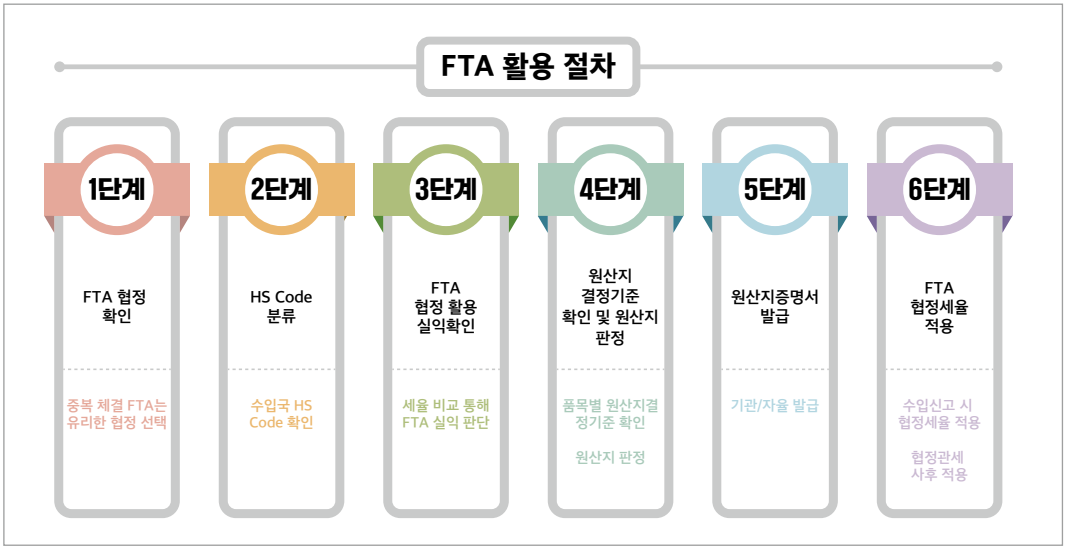
⑥ 수입허가 및 물품 반출

- 세관의 심사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수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수입을 허가하게 되며, 수입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함.
- 이때부터 수입자는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찾아서 유통시킬 수 있음.
-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자료: TradeNAVI, 일본 수입통관절차

## 2) RCEP 활용절차

일반적인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를 따르며, 단계별 상세 절차는 Ⅱ. RCEP 활용 프로세스 내용 참조.




## 3) RCEP 활용 對일 수출유망품목

[단위: 천불, %]

| 연번 | HS 6단위 | 품명 | 對일 수출금액 | | 수출 증감률 (2018-2019) |
|---|---|---|---|---|---|
| | | | 2018년 | 2019년 | |
| 1 | 2841.90 | 산화금속산염이나과산화금속산염의 기타의 물품 | 93,595 | 354,367 | 278.6 |
| 2 | 3923.10 |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99,726 | 103,195 | 3.5 |
| 3 | 3906.90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물품 | 49,532 | 66,586 | 34.4 |
| 4 | 1806.10 |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29,564 | 30,429 | 2.9 |
| 5 | 2209.00 |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9,919 | 28,284 | 185.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Ⅳ RCEP 협정 활용 TIP

## 1. 회원국별 주요 양허품목

### 1) 한국↔아세안(10개국)

- 아세안은 기체결 FTA(한-아세안 등) 관세철폐 수준(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철폐(1.7~14.7%p)하여 최종 관세철폐 비중을 국가별로91.9~94.5%(싱가포르, 브루나이 제외)까지 확대
  - 참고 : 싱가포르(기체결 FTA 100% 철폐), 브루나이(기체결+RCEP 100% 철폐)
  -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인 자동차(부품 포함), 철강, 석유화학과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한-아세안 등) 관세철폐 수준(90.2~95.3%)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1.3~4.3%p)하여 최종 관세철폐 비중을 국가별로 94.6~96.6%로 확대
- 농·수·임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기체결 FTA(한-베, 한-중 등)의 개방 수준을 유지
  - 핵심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제외로 분류하여 현재 기체결 FTA 양허 수준 유지
  - 기존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농산물 130개, 수산물 110개이며, 대부분 장기 관세철폐(10-20년) 등으로 분류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 → 아세안 | | | 아세안 → 한국 | | |
|---|---|---|---|---|---|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 90.2~95.3% | 1.3~4.3%p | 94.6~96.6% | 79.1~89.4% | 01.7~14.7%p | 91.9~94.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 설명자료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 → 아세안(공통) | 아세안 → 한국 | |
|---|---|---|
| 〈공산품 (임산물 포함)〉<br>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윤활유(7%), 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세정위생용품(6.5%), 합성수지(6.5-8%),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등 | 인도네시아 | 자동차부품(0-40%), 철강용기(8-15%), 형강(7.5%), 합성수지(5-10%), 의료용품(5%), 사과(5%), 배(5%), 딸기(5%) 등 |
| | 말레이시아 | 철강제품(5%), 철강관(20%), 화물자동차(30%), 승용차(30%), 기계요소(5), 전선 (5%), 기타플라스틱제품(20%) 등 |
| | 필리핀 | 화물자동차(30%), 자동차부품(10%), 철강판(10%), 세정용품(10%), 면사(7%), 꿀(3%), 맥주(15%), 기타과실(15%) 등 |
| 〈농산물〉<br>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과일주스(9-50%), 기타낙농품(49.5%),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 태국 | 화물자동차(40%), 자동차부품(10%), 타이어(10%), 섬유기계(10%), 세정용품(20%), 딸기(40%), 감(40%), 맥주(60%), 꿀(30%) 등 |
| | 베트남 | 철구조물(10-12%), 화물자동차(15-20%), 철강선(10-15%), 자동차부품(10%), 주류(55), 기타농산가공품(10%) 등 |
| | 브루나이 | 자동차부품(20%), 음향기기(5%), 타이어(20%), 건설중장비(15%), 영상기기(5%), 세탁기(5%) 등 |
| 〈수산물〉<br>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톳(20%), 조개(2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김(20%) 등 | 캄보디아 | 폴리에스터섬유(7%), 승용차(35%), 화물자동차(15%), 건설중장비(15%), 섬유기계(15%), 자동차부품(15%), 사과(7%) 등 |
| | 라오스 | 화물자동차(30%), 산업기계(5%), 펌프(10%), 냉장고(10%), 섬유제품(10%), 장갑(5%), 타이어(10%) 등 |
| | 미얀마 | 화물자동차(3%), 섬유제품(4-7.5%), 자동차부품(5%), 기타고무제품(5%)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 설명자료

## 2) 한국↔중국

- 양국은 기체결 FTA(한-중) 철폐 범위 내에서 전반적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
- 중국은 한-중 FTA에서 철폐되지 않은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을 추가로 철폐 (기존 90.6% → RCEP 91.1%(품목수 기준))
- 한국은 이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고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농산물 4개 품목을 추가 철폐 (기존 92.0% → RCEP 92.0%(품목수 기준))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 → 중국 | | | 중국 → 한국 | | |
|---|---|---|---|---|---|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 92.0% | 0.03% | 92.0% | 90.67% | 0.5% | 91.1% |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 → 중국 | 중국 → 한국 |
|---|---|
| 덱스트린(8%), 녹용(녹각, 전지 등) (20%) | 선박용부품(5%), 스테인레스강선재(10%), 화학기계(35%), 의료용기기(4%), 기타산업기계(15%), TV카메라(10%), 재료시험기(7%), 제어기부품(7%), 음향기기부품(30%)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 설명자료

### 3) 한국↔일본

- 양국 관세철폐 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한국에게 2%p 추가 관세철폐(韓76%, 日78%)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했으며, 개방한 품목도 장기 철폐(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

* 관세를 매년 동일한 비중으로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비균등하게 철폐하는 방식

- 농수산물의 경우, 한-일간 최초 FTA이며, 민감성을 고려하여 낮은 개방수준(농산물 46.2%, 수산물 47.9%)으로 시장 개방 협상 마무리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 → 일본 | | | 일본 → 한국 | | |
|---|---|---|---|---|---|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 - | - | 83.0% | - | - | 83.0% |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 → 일본 | 일본 → 한국 |
|---|---|
| 플라스틱제품(6.5%), 판유리(8%), 석유화학중간원료(3%), 석유화학제품(3%), 은(가루)(3%), 중유(벙커C유) 3%, 금(기타)(3%), 합금철(페로니켈)(3%), 광학렌즈(기타)(8%), 정밀화학원료(5.5%), 맥주(30%) 등 | 플라스틱제품(4.8%), 합성수지(2.8-3.1%), 증류주(소주 등)(16%), 판유리(3.1%), 구리판(3%), 필름류(4.8%), 화학공업제품(2.6%), 비철금속제품(2.5%), 정밀화학원료(3.1%), 폴리카보네이트(2.8%)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 설명자료

### 4) 한국↔호주·뉴질랜드

- 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전반적으로 기체결 FTA 철폐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하여, 민감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보호
-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기체결 양자 FTA상 전 품목 관세철폐
-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입액이 미미하고 민감성이 낮은 일부 농수산물에 국한하여, 각 4개(對호주), 1개(對뉴지)를 기체결 대비 추가 철폐(20년철폐)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 → 호주·뉴질랜드 | | | 호주·뉴질랜드 → 한국 | | |
|---|---|---|---|---|---|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기체결FTA | 추가 철폐 | 최종 수준 |
| (호) 98.1% | (호) 0.03% | (호) 98.2% | 100% | - | 100% |
| (뉴) 97.9% | (뉴) 0.01% | (뉴) 97.9% | | | |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 → 호주·뉴질랜드 | 호주·뉴질랜드 → 한국 |
|---|---|
| (호) 기타육류(소시지케이싱) (27%), 기타어류(25%), 뱀장어(27%) | - |
| (뉴) 기타어류(25%)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 설명자료

## 2. RCEP 협정 활용 유망업종

### 1) 철강산업

- 한국의 對RCEP 철강재 수출 비중이 '19년 46.8%에서 '20년 53.2%로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아세안의 철강수요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 발효 후 對아세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 철강수요 : ('20) 73백만 톤 → ('21) 77.3백만 톤

### 2) 자동차 산업

- 아세안의 경우 인구 6억 5천만, 연간 350만대 판매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RCEP 발효 후 완성 차 및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아세안 지역은 일본 업체가 74%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등 일본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RCEP을 통해 아세안 시장 공략 뿐 아니라, 제3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완성차의 경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변속기, 클러치, 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모든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됨

### 3) 기계산업

- 한국의 對RCEP 일반기계 수출은 '19년 233억불로 전체 수출 중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임.

  * 수출규모(비중) : 중국 123억불(23%), 베트남 38억불(7.2%) 등
-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50억불 적자를 기록 중이며, 다행스럽게도 '19년에는 對日적자가 29.6억불로 크게 감소 했는 바, RCEP에서 상당수 기계 품목이 對日양허제외, 20년 철폐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등 여타 시장에 대해서는 RCEP 발효 시 원동기 펌프, 광학기기, 건설광산기계, 기타 기계류 등 우리 주력 품목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4) 섬유산업

- 우리의 對RCEP 섬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對RCEP 해외투자 법인수는 4,900개(전체의 82%), 투자액은 72.7억불(전체 69%)에 달하는 등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한 지역임.
- 섬유분야의 경우, RCEP 발효 시 일본 수출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는바, 일본 화학 섬유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 철폐이나, 우리에게는 대부분 즉시철폐*된다고 밝힘
  * 일본 화학섬유 즉시철폐 품목(기존 관세 3.5% ~ 6.6%) : 폴리 에스터 단섬유, 폴리 에스터사, 부직포, 폴리에스터 직물 등
- 아울러,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원산지 누적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 우리 섬유업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 개최」

## 3. RCEP 활용 지원대책

### 1) 원산지증명서 활용 지원

①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RCEP 발효 전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활용 지원

- (접수) 관할지 본부(직할)세관을 통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
- (심사 간소화) RCEP-중 · 아세안 · 베트남 협정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을 통해 旣 인증수출자는 간이한 심사* 절차 적용

  → 旣 인증 협정과 동일 품목(HS 6단위기준)으로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완화(850개 대상품목 별도 공지)된 경우 인증 심사 시 제출서류 간소화

  [現]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BOM, 제조공정도 등) 등 14종의 서류 제출

  [改]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등 3종 → 심사 생략
- (인증서 발급) 인증 효력은 협정 발효 이후에 부여
- (인증특례 신청기간) '21. 12. 8. ~ '22. 1. 28.
- (접수) 관할지 본부(직할)세관을 통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

② 증명절차 간소화

국내제조 사실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간이확인 제도 법제화 및 혜택 확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등

→ (RCEP 활용) 對日 주력 수출물품 등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신규 발굴

자료: 관세청,「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 2) RCEP 및 FTA 애로사항 해소

① RCEP 활용지원

-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시스템(Tradenavi)을 12월까지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 예정.
-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하여 올해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한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여 RCEP 협정 활용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출범,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② 신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

- RCEP 발효에 따른 한국-호주 교역관계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2.22일(수) 호주 시드니 코트라 무역관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시드니 센터)를 개소하였음.
- 시드니 센터는 앞으로 발효 8년차인 한국-호주 FTA와 발효가 임박한 RCEP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과 호주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홍보·컨설팅·설명회·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 예정.

### 3) 중소기업 RCEP 활용 촉진

① 협정문 제14장 [중소기업] 챕터 활용

- 기체결 FTA와 달리 중소기업 분야가 별도의 챕터로 포함되어 중소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대해 세부 조항을 상세히 명시함.
- 중소기업이 회원국가 내의 경제성장, 고용, 혁신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만큼 협정국 내 중소기업 간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챕터를 기준으로 RCEP 회원국 간 중소기업 분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② 협정문 제12장 [전자상거래] 챕터 활용

-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온라인 수출과 관련해서 RCEP 협정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챕터가 도입되어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함을 공표.
- 전자상거래 수출환경이나, 특히 문제가 되는 위조물품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 개선 등을 통해서 국내기업의 콘텐츠 보호라든지 투자 강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RCEP 회담 관련 중기부 사안 사전 브리핑」

## 문의처

###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RCEP 역내 지역에는, 2021년에 개소한 프놈펜 센터(6월)와 시드니 센터(12월)를 포함, 총 7개국(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호주) 12개소 센터 운영 중임.

〈RCEP 역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 국가 | 지역 | | 연락처 |
|---|---|---|---|
| 중국 (5) | 베이징 | | (86-10) 6410-6162 / yimhongsil18@kotra.or.kr |
| | 상하이 | | (86-21) 5108-8771 / crystal.lee@kotra.or.kr |
| | 칭다오 | | (86-532) 8388-7931 / zhouchunjia@kotra.or.kr |
| | 광저우 | | (86-20) 2208-1610 / huizhen@kotra.or.kr |
| | 다롄 | | (86-411) 8253-0051 / Alice717133@kotra.or.kr |
| 아세안 (6) | 베트남 | 하노이 | (84-24) 3946-0511 / kty5714@kotra.or.kr |
| | | 호치민 | (84-28) 3822-3944 / rainaju27@kotra.or.kr |
|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62-21) 574-1522 / anis@kotra.or.kr |
| | 태국 | 방콕 | (66-2) 035-1555 / dana719176@kotra.or.kr |
| | 필리핀 | 마닐라 | (63-2) 8894-4084 / thkim@kotra.or.kr |
| | 캄보디아 | 프놈펜 | (855-23) 999-099 / kotrapnh@kotra.or.kr |
| 호주 | 시드니 | | (61-2) 8233-4050 / sungbin.kim@kotra.or.kr |

〈RCEP 역외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 국가 | 지역 | 연락처 |
|---|---|---|
| 인도 | 뉴델리 | (91-11)4230-6319/ sy.yoon7102@gmail.com |
| | 첸나이 | (91-44)2499-7283/ d.shin@kotra.or.kr |
| 멕시코 | 멕시코시티 | (52-55)5514-3173/ hmlee@gmail.com |

## 문의처

### FTA종합지원센터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FTA종합지원센터 : 중소기업의 FTA활용의 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FTA 관련 6개 정부부처와 9개 지원기관이 모여 민관 합동으로 운영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6개 시, 도에 18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해 연계 운영 .

| 기관명 | 이메일 | 사무실 전화번호 |
|---|---|---|
| FTA 종합지원센터 | harry.ryoo@kita.or.kr | 02-6000-7593 |
| 강원 | minsung.kim@kita.or.kr | 033-257-4071 |
| 경기 남부 | lyh9922@gsmba.kr | 031-8064-1389 |
| 경기 북서부 | jinju@gsmba.kr | 031-995-7484 |
| 경남 | sjw@cwcci.or.kr | 055-210-3043 |
| 경북 | rlehdghk@naver.com | 054-454-6603 |
| 경북 동부 | jangds@korcham.net | 054-274-2233 |
| 광주 | jjangpak@korcham.net | 062-350-5861 |
| 대구 | liessang@naver.com | 053-222-3105 |
| 대전 | anybest0614@gmail.com | 042-480-3044 |
| 부산 | goldtut@korcham.net | 051-990-7016 |
| 세종 | mkjeon88@daum.net | 070-7780-2436 |
| 울산 | sr7111@kita.net | 052-287-3060 |
| 인천 | lyun1029@incham.net | 032-810-2838 |
| 전남 | kimsh_1224@naver.com | 061-288-3872 |
| 전북 | kory@jbba.kr | 063-711-2046 |
| 제주 | startwith87@naver.com | 064-759-2577 |
| 충남 | bka_1106@cepa.or.kr | 041-539-4591 |
| 충북 | kom27@korcham.net | 043-229-2726 |

## 문의처

### 관세청

- 관세청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
-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음.

| 종합지원센터 | 연락처 |
|---|---|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25 |

| 구분 | 연락처 | 이메일 |
|---|---|---|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 incheonsupport@korea.kr |
|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 FTA010@korea.kr |
|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 busansupport@korea.kr |
|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 daegusupport@korea.kr |
|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 ftafta071@korea.kr |
| 평택직할세관 | 031-8054-7175 | fta016@korea.kr |

## 문의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는 체계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전국에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운영중.
-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현장 밀착 지원, 수출촉진 사업, 현장애로 타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연번 | 수출지원센터 | 대표번호 |
|---|---|---|
| 1 | 서울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0 |
| 2 | 부산 수출지원센터 | 051-601-5165 |
| 3 | 대구·경북지방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3 |
| 4 | 광주·전남지방 수출지원센터 | 062-360-9192 |
| 5 | 제주지방 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 6 | 경기지방 수출지원센터 | 031-201-6948 |
| 7 |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 031-820-9034 |
| 8 | 대전·세종지방 수출지원센터 | 042-865-6153 |
| 9 | 울산 수출지원센터 | 052-210-0063 |
| 10 | 인천지방 수출지원센터 | 032-450-1136 |
| 11 | 강원지방 수출지원센터 | 033-260-1675 |
| 12 | 충북지방 수출지원센터 | 043-230-5388 |
| 13 | 충남지방 수출지원센터 | 041-415-0607 |
| 14 | 전북지방 수출지원센터 | 063-210-6482 |
| 15 | 경남지방 수출지원센터 | 055-268-2545 |

## 주요정보원




### 1. FTA 협정문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확인)

▷ 포 털 명 : FTA 강국, KOREA
▷ 포털 주소 : http://www.fta.go.kr
▷ 연 락 처 :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나라 FTA현황 한눈에 보기
- FTA활용, 국내 지원대책
- 관세율 정보, 원산지정보
- FTA 정보광장 (최신뉴스, 참고자료, FTA쉽게알기)




### 2. 국가정보 및 통상정보, 해외시장동향

▷ 포 털 명 : KOTRA 해외시장뉴스
▷ 포털 주소 :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 연 락 처 : 1600-7119
▷ 운영기관 : KOTRA

- FTA협정별 실무 가이드북 게재
- 151개국 국가정보
- 해외시장동향 (현장정보, 칼럼·기고, 포토뉴스, GW뉴스레터)
- 통상정보 (국가별 FTA·통상정책, 통관·수입규제, TBT, 기타 무역장벽 관련 통상속보)




※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3.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하기

▷ 포 털 명 : UNI-PASS
▷ 포털 주소 : www.customs.go.kr
인터넷 접수: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운영기관 : 관세청

* 품목별 분류 사전심사제도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하는자 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4. 원산지증명 발급 및 검증지원

▷ 포 털 명 :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포털 주소 : https://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연 락 처 : FTA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운영기관 : 관세청

-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원산지검증 (서류보관가이드, 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지원 센터 FTA 사후검증 상담전담팀 (1577-8577))
- 협정별 자료, FTA통계, 세율정보
- 「한-중 FTA 100문100답」, 「FTA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 5.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포 털 명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포털 주소 : http://okfta.kita.net
▷ 연 락 처 :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FTA1380상담 (업종별 · 협정별 · 애로별 상담)
- 수출자, 로컬수출자, 수입자별 FTA Flow 절차 안내
- FTA 활용 (FTA 효과분석, 품목분류, 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류 및 증빙 관리, 사후검증대응)
- FTA협정정보 (한국, 주요국, 전세계의 FTA체결현황)
- 관세율/원산지 (수출, 수입세율 조회, 원산지기준, 판정 시뮬레이션, HSK품목분류 등)




## 6. FTA 활용교육 소개

▷ 포 털 명 : FTA 사이버연수원
▷ 포털 주소 : https://www.e-kpc.or.kr/fta/
▷ 연 락 처 : 724-1151
▷ 운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RCEP 실무활용가이드

**발 행 인** | 유정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1년 12월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 S B N** | 979-11-402-0058-0 (93320)
979-11-402-0059-7 (95320)(PDF)

Copyright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RCEP 실무활용 가이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 979-11-402-0058-0 (93320)
979-11-402-0059-7 (95320)(PDF)